<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3803

맛닭 짚불 닭갈비 정보공개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1-11-02 www.mdcco.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4-16

맛닭 짚불 닭갈비

정 보 공 개 서

㈜꼬꼬F&B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꼬꼬F&B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 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 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20, 4층(장안빌딩)

대표전화: 1661-3392 **가맹사업부 전화**: 1661-3392

팩스번호: 02-2208-2291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별첨 서류

※별첨서류[별첨 1~2] 재무제표[별첨 3] 가맹금 예치 신청서 서식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 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마당'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법령 및 제도'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맛닭 짚불 닭갈ㅂ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0, 4층(장안빌딩)						
㈜꼬꼬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		대표팩스번호
에프앤비	2013. 10. 10		2013. 10. 01		인치수	1661-	3392	02-2208-2291
	법인등록번호 1		10111-5242964		사업자등	·록번호	20-	4-86-4579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0, 4층(장안빌딩)			
대표이사	인치수 (주)꼬꼬에프앤비	맛닭 짚불 닭갈비 외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인치수	1661-3392	02-2208-229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동대	배문구 장한로 20, 4 [.]	층(장안빌딩)
사용인 (임원)	전상연 (주)꼬꼬에프앤비	맛닭 짚불 닭갈비 외3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인치수	1661-3392	02-2208-229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해당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맛닭 짚불 닭갈비	-
상 호	맛닭 짚불 닭갈비 OO점	-
상표(서비스표)	맛닭 짚불 닭갈비	사용로고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8,578,260	1,515,139	7,063,120	12,456,151	553,741	456,964
2023년	9,265,850	1,440,429	7,825,420	14,042,289	945,450	762,299
2024년	10,220,435	1,381,366	8,839,069	13,659,378	1,472,555	1,013,648
위 재무상황의 근거는 별첨의 재무제표입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8	이름	성지이		사업경력	
구분	이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01+1.4		2011.2.~2013.11.30	꼬꼬F&B 대표	+111 QD +21
관련 임원	인치수	대표	2013.12.01.~현재	㈜꼬꼬에프앤비 대표	회사 업무 총괄

	전상연	이사	2013.12.01.~현재	㈜꼬꼬에프앤비 사내이사	관리 총괄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UN	임원:	수(명)	TIQA/III)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4년 12월 31일	2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 / 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꼬꼬에프앤비	가맹사업경영	2011-02-14 ~ 현재	맛닭꼬(20110100490)라는 영업표지의 치킨 사업경영
가맹본부	㈜꼬꼬에프앤비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예정	맛닭을 품은 찜닭 (20213804)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가맹본부	㈜꼬꼬에프앤비	가맹사업경영	가맹사업 개시예정	맛닭을 품은 후닭 (20213805)이라는 영업표지의 한식 사업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및	권리자	존속기간
상표(서비스표)	등록일자	등록번호		만료일
맛닭 짚불 닭갈비	출원 준비중	출원 준비중	출원 준비중	출원 준비중

권리내용	간판 및 사인물 등의 영업표지로 사용			

[※] 상기 상표권의 경우 출원준비중에 있으므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가맹계약 체결 사실이 없습니다.

2. 해당 가맹사업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꼬꼬에프앤비	맛닭 짚불 닭갈비	인치수	가맹사업 예정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0, 4층(장안빌딩)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정립표시	대분류	중분류(주요상품)	
맛닭 짚불 닭갈비	한식	닭갈비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		2023.12.31	•		2024.12.31	•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_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6. 해당 가맹사업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맛닭 짚불 닭갈비]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정보공개서		가맹?	점 / 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 / 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2.	2023.	2024.
					12.31	12.31	12.31
가맹본부	㈜꼬꼬에프앤비	맛닭꼬	20110100490	치킨	125 / -	130 / -	130 / -
가맹본부	㈜꼬꼬에프앤비	맛닭을 품은 후닭	20213805	한식	- / -	- / -	- / -
가맹본부	(주)꼬꼬에프앤비	맛닭을 품은 찜닭	20213804	한식	- / -	- / -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의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사업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기에, 직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 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말							
지역	2024년 글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비고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1	-	-	-
전북	-	-	_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8.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당사의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사업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의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사업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기에 직전 사업연도(2024년도) 말 『맛닭 짚불 닭갈비』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는 없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딘	비고		
丁正	구인	-현 기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미끄
합계	-	-	-	-	-	손익계산서 참조
광고	소계	연중	-	-	-	손익계산서 참조
판촉	소계	연중	-	-	-	손익계산서 참조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 가맹본부와 예치계약 된 은 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수신상품부	각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031-970-53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가맹본부와 계약한 예치 은행에 창구에서 예치신청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뱅킹에 의한 예치방법은 가맹금예치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당 가맹본부 상호를 찾아 예치금액을 입력하여 예치하시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예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므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400	-	-	-	-
가입비	3,3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오픈 이전 해지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벌등 공제 (가맹계약서 제9조, 제36조 참고)
교육비	1,100	계약체결과 동시에 예치	교육 미 이행시	교육으로 비용소요	1인 교육비,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 30일 이내의 미납 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과 정산 후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물류 보증금	해당 없음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400
가입비	3,300
교육비	1,1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 m ² 당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	62,260	4,151	-	-	
인테리어	협력업체	33,000	2,200	- 계약시 : 50% - 중도금 : 30% (공사 시작 후 1주일) - 완공시 : 20% (영업 개시 1일전)	미공사시	
간판	가맹본부	5,500	367			
설비 및 기기	협력업체	9,900	-			49.5 <i>m</i> ²
집기 및 비품	협력업체	3,850	-			(15평)기준
의탁자	자율 또는 협력업체	3,300	-	입고 시	미공급시	
POS	협력업체	1,760	-			
홍보인쇄물	가맹본부	1,650	-			
원부재료	가맹본부	3,300	-			

- ※ 매장의 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는 직접 시공 할 수 있으며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 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의탁자, TV, 오디오,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기기, 냉동냉장기기, 기타 실외공사 등은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추정한 것으로 지불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 가맹희망자의 책임으로 가맹점의 점포입지를 선정한다. - 가맹본부는 유동인구, 교통량, 입지의 특성, 시장의 특성, 구매습관, 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근로계약서작성 미성년자 부모동의서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납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V. 영업활동에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가맹점사업자

		대한 조건 및 제한 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고				간 균등부담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실시 전	실시 후	판촉 시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교육실시 전	실시 전	실시 후	교육필요시 실시
로열티	-	면제	-	-	-	-
점포환경 개선비용	-	가맹본부가 요구시 : Ⅷ.1 외 비용 부담	-	-	-	가맹점사업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 지급 기일 경과시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 ☞ 당사의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사업은 2025년에 시작할 예정이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제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문의: 관리팀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관리팀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2)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합니다. 다만,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가맹비, 교육비와 양도승인비 양수도업무지원비로 금 일백육십오만원(₩1,65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의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1)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2) 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영업표지나 노하우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위 영업표 지가 표기된 모든 시설물 · 비품 · 집기 등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 원상회복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귀하는 이행지체 1일당 3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영업비밀자료(매뉴얼, 관계서류 등)을 종료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4) 가맹점사업자가 철거 ·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사가 직접 철거 ·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하는 철거 · 원상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통하여 철거 ·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영업양수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업무의 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원부재료 리스트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들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 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들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 메뉴 추가 및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기에 계약기 간내에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은 상이해질 수 있으며 귀하는 변경된 공급품목 을 반드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급받여야 함을 알립니다.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 귀하가 [맛닭 짚불 닭갈비]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아래>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상품·용역명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상품 중 주류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 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짚불 닭갈비	15,000원		
짚불 매운 닭갈비	16,000원		
짚불 목살	17,000원		니자사회이나 거어사회
짚불 무뼈닭발	16,000원	고민 이서 패스	시장상황이나 경영상황, 메뉴출시 및 변동에 따라
안심 계란찜	8,000원	공문, 유선, 팩스	가격과 메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볶음밥	5,000원		жылд.
닭계장	8,000원		
계란탕	6,000원		

※ 귀하가 가맹본부가 별도 통보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들이하 어즈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닭갈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 업종	맛닭 짚불 닭갈비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방법	
특수상권인 경우	특수상권 내	
특수상권 아닌 경우	일반적인 경우:약 반경 500m 단, 계약체결시 · 계약체결 이후 가맹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설정한 영업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철, 병원, 시장 등 특수상권이 있는 경우 그 특수 상권은 별도의 영업지역으로서 당사가 직영점 및 가맹 점을 개설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별도 표시

※ 귀하의 배달영업활동 지역은 당사와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5조 제3항을 토대로 합의하여 설정한 영업지역으로 권장하며 현실적으로 배달어플등의 문제 등으로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배달영업지역이 겹치는 경우 부득이하게 가맹점사업자간의 자율경쟁임을 알리는 바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간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배달영업지역 조정 등 중재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	재조정 사유 발생 →	영업지역 변경(안)을
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 담당팀 검토 →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변동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 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 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ㆍ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 해당 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해당 영업표지로 발생한 매출액이 없기에 모든 비중을 0%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단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해당 영업표지로 판매한 온·오프라인 상품이 없기에 모든 비중을 0%로 기재하는 바입니다.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해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1년**이며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①+15일 이내

예→B, 아니오→A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_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만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_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힌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해당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1) 일반적인 해지사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4조 제3항 참조)

-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간 더 이상 신뢰에 의한 가맹 사업거래의 지속이 곤란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제4항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가맹점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가맹점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는 경우
-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본부를 양도하는 경우
-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공급 및 경영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신의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즉시 해지사유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가맹계약서 제34조 제4항 참조)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ㅇ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처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조건을 수 정 사유 발생 시 사전고지 및 교육 진행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양도 2개월 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이 경우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및 양도 승인비(양수도업무지원비 등)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양수인 과 신규 가맹계약으로 체결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본부가 승인한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
업무위탁	불가능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 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에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귀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맛닭 짚불 닭갈비]와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1년 동안은 [맛닭 짚불 닭갈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점포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영업[맛닭 짚불 닭갈비]와 동종(타사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경영 등)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닭갈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 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매장별 여건에 맞게 조정	주 6일 이상	문의: 관리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명 (15평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월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월	본사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본 계약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下正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니끄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광고 전체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의 80% (가맹점 수로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브랜드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의 80% (가맹점 수로 균분)	제시(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	-
가맹본사가 추진하는 판촉 전체행사	할인행사	판촉비의 20%	판촉비의 80% (가맹점 수로 균분)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
	증정행사	판촉비의	판촉비의 80%	제시(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20%	(가맹점 수로 균분)		
	팸플릿 등 제작	제작비의 20%	판촉비의 80% (가맹점 수로 균분)	지급	
	기타 전체행사	행사	에 따라 유동적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2)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3)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당해 가맹점 점포에서 '맛닭 짚불 닭갈비' 사업이외의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 위약벌로 당사에게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 개점 이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시에는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정해진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남은 금원을 반환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정한 구입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거나 가맹계약서 제19조(구입강제품목의 지정과 공급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 금일천만원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사업자가 제21조(영업의 표준화와 판매가격) 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위약벌로 당사에게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영업양도)를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이천만 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해지하는 경우와 제34조(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규 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임의중단 및 폐업처리하거나 '맛닭 짚불 닭갈비'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금이 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당사에게 위약벌로 금사천만원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9.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 후 제35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1일 금삼십만원(₩300,000원)씩 당사에 지불하여야 합니다.
- 10.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 11. 당사는 이에 대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산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 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15평 기준, 부가세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당사 전체 시공 시	약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0(1일)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제공	D-39(1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6~38(13일)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5(1일)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4(1일)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 시공비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2~23(2일)	4)번 항목 참조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	D-2~21(20일)	
개점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초도물품 입고	D-1(1일)	
개점	- 가맹점 개점 및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o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선 사유	o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o 간판교체 비용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ㅇ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 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 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 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부담	문의: 지원팀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할수 있습니다.	무님 (기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음	문의: 지원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이론, 실습	오픈 2일 전 까지	필수 교육	
보수 교육	보수 교육 신 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필요시	필요 시	
특별 교육	필요시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일(1일 8시간)	1,100천원(1인 기준)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수 교육	보수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신 메뉴 출시 등
특별 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필요시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가맹점 오픈이 지연되거나 가맹점에 근무 할 수 없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당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당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 당사는 직영점 운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가맹본부 재무제표 (2024년)

[별첨 2] 가맹본부 재무제표 (2023-2022년)

[별첨 3] 가맹금 예치 신청서 서식

(앞 쪽)

ᄁᄓᄜᄀᅅᅥᆉᄊᅒᄱ					처리기간		
			가맹금예치신청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_, _,	상호명(영업표지)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의 계좌						
가맹본	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 ^혀		ήL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관리팀(1661-33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 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